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 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수용	마국준	김재정	윤준병	03/19 김상범
협 조				
안전표지팀장 김종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622
결재일자	2012.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9호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관리방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관리방안 보고

- ◆ 보행자의 무단횡단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호울타리를 중앙 차선 내에 설치하고 있으나,
- ◆ 국토해양부로부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설치 지침이 제정·통보 되어 기설치 유지관리중인 대부분의 무단횡단 방지 방호울타리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에서
 - 서울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로부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신규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 ◆ 주요 간선도로 등에 적용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보고 드림

1 개 요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 무단횡단 방지시설 정비 추진계획(도시교통본부장 방침 '08.11.25)
- ▶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기준 수립(도로기획관 방침 '09. 3.31)
-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0. 5)개정
- ▶ 질의회신(1, 2차)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3662('11.12.27),-386('12.02.13)
- ▶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신규설치 요청('12년)
 - 서울경찰청 요청 : 17개소, 5,994m(소요예산 85백만원)
 - 영등포경찰서 요청 : 7개소, 4,680m(소요예산 66백만원)
 - 중부경찰서 요청 : 4개소, 1,590m(소요예산 22백만원)
 - 합 계 : 28개소, 연장 12,264m(소요예산 173백만원)

■ 설치 현황

- 총 계 -- 44,193m
 - ▶ 중앙버스전용차로 : 24,455m
 - ▶ 주요 간선 도로 : 19,738m



■ 설치 경위

- 무단 횡단방지를 통한 교통사고 방지
 - ▶ 대부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반사지형태의 방호울타리 설치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손해보험협회 및 자치구에서 설치
 - ▶ 도로여건상 정식 중앙분리대 설치가 어려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주요간선도로에 무단 횡단방지를 위해 차선택으로 설치

※ 방호울타리 비교



【당초 반사지형 방호울타리】



【정비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시설】

- 무단 횡단방지 시설, 시선유도봉 신규설치 금지(시장지시 '10. 1.11)
 - ▶ 신규설치 금지 지시에 따라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위주 정비
 - ▶ 국토해양부 설치기준(2010. 5) 개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설치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도로부속시설물"에 해당

국토해양부 규정(2010.5.11)

1. 최근 3년간 반경300m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사망사고 포함시 3건)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3.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4. 중앙분리대 측대 0.25m이상 확보 가능한 구간(설계속도 80km/h 미만)

※ 현재 차도상에 설치한 대부분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됨

●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시 의견 수렴(국토해양부)

- ▶ 경찰청에서 위 지침 개정시 단서조항 신설하여 예외 인정 요청

-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 지침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

※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요청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제정으로 기존 도로는 극히 제한적 가능

● 유지관리부서(도로사업소, 자치구)에서 인력부족과 예산과다 소요로 확대 설치에 소극적임

● 도시미관 저해

- ▶ 동절기 제설기간 동안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도시미관 저해
- ▶ 방호울타리 자동차 매연, 먼지 등으로 불결한 상태로 관리
- ▶ 중앙차선 시인성 불량



● 유지관리 미비로 기능 저하, 도로상 방치로 2차 사고 위험

- ▶ 차량충격 등으로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본래의 무단횡단 방지 기능 저하, 운전 방해 요소로 작용



■ 문제점

● 관련 법령상의 문제

- ▶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80km/hr미만 도로에서는 측대를 0.25m이상 확보하고 방호울타리 설치
 - 현재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도로구조는 방호울타리설치를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및 시공 됨
 - 방호울타리설치에 필요한 측대 0.25m 확보를 위하여 도로구조를 재설계 필요
-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안조례” 제5조에 의하면 보행자의 무단 횡단방지용 방호울타리는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부서도 미 지정
 - 현재 총괄업무 : 교통운영과, 유지관리업무 : 각 도로사업소

● 예산상의 문제

- ▶ 측대 0.25m 확보를 위하여 도로구조 재설계 및 시공(차선제거 및 재도색 등)으로 예산 추가 필요

※ 100m(6차로) 기준 : 40% 추가 소요(방호울타리 1천만원, 차선재도색 4백만원)

● 유지관리상의 문제

- ▶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기존시설물을 정비위주 추진
- ▶ 불법시설물이라는 사유로 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 기피
- ▶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유지관리중인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방안 수립 필요

■ 기능 및 관련 법규

● 기능측면

- ▶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예방은 보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임
- ▶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보행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찰단속 병행 필요

● 관련법규

- ▶ 도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해당 항목이 없음
- ▶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0. 5)
 - 2010.5월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구분함
-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질의회신(국토해양부)
 - 질의회신 결과 **설치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도로부속물”**에 해당 함
-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부서도 미 지정
- ▶ 그 동안 명확한 법규 및 규정은 없으나, 보행자의 무단 횡단방지를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설치

■ 유지관리부서 및 전담부서 지정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상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업무는 유지관리부서 및 전담부서 지정
 - ▶ 근거 :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설치할 경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도로부속물”**에 해당됨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추진

■ 신규설치구간

● 설치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 할 경우

- ▶ 국토해양부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 ▶ 설치의 타당성 검토는 시설물유지관리부서와 경찰 합동 조사를 통하여 결정
- ▶ 규제심의 대상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경찰에서 심의 조치

● 설치요건을 부분 충족할 경우

- ▶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가능한 구간
- ▶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
→ 당해 구간을 우선하여 설치
- ▶ 무단횡단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도로구조 변경(차로 폭 조정)이 불가능한 구간은 차도의 중앙차선에 미설치
(단, 보도에 설치 가능한 구간은 보도에 우선 설치)
- ▶ 시설물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은 경찰의 단속으로 무단횡단 방지 요청

■ 기 설치구간(유지관리구간)

● 도로구조(차로 조정과 측대 확보) 조정이 가능한 경우

- ▶ 위 신규설치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 할 경우와 같이 시행

● 위 『지침』의 4가지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도로구조(차로 조정) 조정도 불가능한 경우

● 기 설치구간 유지관리(안)

구분	1안	2안	3안	비고
	지침에 따라 철거	점진적 철거	유지관리	
장점	-관련 규정준수 -도로미관 향상 -유지관리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 준수 -도로미관 유지 -유지관리비용 절감	-민원(경찰)해소 -무단횡단사고예방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유지	
단점	-철거비용 과다소요 -철거에 따른 상대민원(경찰) 발생 -무단횡단 사고발생	-단기적으로 관련 규정 미준수로 형평성 문제 발생 -도시미관 저해 -사고발생시 법적다툼 -경찰 반대예상	-유지관리비용 과다소요 -관련규정 미준수로 형평성문제 및 일반민원 발생 예상 -사고발생시 법적다툼	
건의		○		

5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단기 정비 -- '12. 3 ~ 6

- 무단 횡단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철거는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부정적 여론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비 추진, 무단 횡단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철거는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부정적 여론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비 추진
 - ▶ 우선, 「지침」에 맞지 않는 구간은 합동점검(유지관리부서, 경찰)을 통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경찰의 규제심의를 득하여 설치
- 적법설치가 불가한 구간으로서 차량 충격으로 파손구간(기존설치구간)
 - ▶ 시설물 일제정비가 필요하나 위 방안에 따라 중앙파손구간을 우선 정비
 - ▶ 좌우(전후)는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 교통사망사고 발생으로 신규설치 요청 구간

- ▶ 유지관리부서와 경찰 합동점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 요건 충족시 경찰의 규제심의를 득하여 설치

■ 개선대책 시행 -- '12. 3 ~ 12

- 조례 개정(유지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
- 품질관리(재질, 시공 등) 기준은 국토해양부에 제정 요청. 끝.

◆ 참고자료 1. 용어정리(측대)

2. 관련법규 및 지침

3.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4.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세부 추진경위